

붙임 1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자 격	제출서류
1. 장애인 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3.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보호종료 확인서, 재원증명서 또는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퇴소확인서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만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	한부모가족 증명서
7.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他지역 출신 학생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등본 - 기숙사, 고시원등: 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1.장애인 가정 ~ 8.주거비 지원 필요자 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배려계층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제출 서류는 5년 간 대학별 자체 보존 및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위 증빙서류 종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선발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